

## 1. 개정이유

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, 임신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호출산 신청인에 대한 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(안 제9조)

- 1)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도록 함
- 2)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은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함

나. 임신부확인서의 유효기간 구체화(안 별지제2호서식)

- 1) 의료기관에서 위기임산부가 가명 진료를 받은 경우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할 때 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힌 ‘임산부확인서’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신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가명 진료 기한을 제한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점을 명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

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임신부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임신부확인서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임신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은 임신부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임신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에 따른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) ① (생략)<br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한다. | 제9조(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u>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<br/>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<br/>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<br/>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/u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 임산부 확인서

대상자

성명: (지역상담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명)

전산관리번호:

생년월일:

위기임신 상담 지역상담기관

기관명:

전화번호: (응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번호)

주소: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고 | 대상자 사용 약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그 밖에 대상자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출산 연월일: (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작성 후 날인)<br>유효기간: 출산 후 6개월 |

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증서를 제시한 임산부는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역상담기관의 장 직인

### 유의사항

- 본 확인서를 지참한 대상자의 응급수술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출산 상담·신청 지역상담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위 사람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제2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이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 다만 임산부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
- 의료기관의 장,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임산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임산부확인서를 보유한 사람은 임산부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함으로써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에 따른 각종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